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담의 범위(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규정 (안 제4조)
- 상담대상자(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규정 (안 제5조)
- 상담방법(직접방문, 서면, 온라인 등)규정 (안 제6조)
- 법률상담관(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규정 (안 제7조)
-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민기)

- 본 제정 조례안은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것으로,
-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 호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자치사무’로 보이며, 기타 상위 법령 위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4%인 21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도봉,마포,금천,영등포 미제정)
- 또한, 무료 법률상담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적법함. (2007.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따라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제정안의 조문체계는 본문 1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상담실 설치, 상담실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안 제7조는 상담의 범위를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기업 활동, 부동산, 세무 분야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담관도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위촉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상담대상자를 영등포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으로 하되,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상담 우선권을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상담 기록부 또는 전산과일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법률상담의 특성상 개인의 신상을 비롯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안에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안 제11조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8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 변화가 다양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상담실 운영 및 위치, 상담의 범위 규정(안 제1조~제4조)

-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 분야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및 상담실 설치 장소를 정하고 상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나. 상담 대상자,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
(안 제5조~제8조)

- 상담 대상자를 영등포구 구민, 기업인, 직장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 명시하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 법률상담관 자격 및 위촉 사항과 법률상담관에게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 사생활에 대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

다. 상담처리와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및 운영세칙 규정(안 제9조~제12조)

- 상담처리시 답변 방법과 상담에서 발견된 행정 참고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상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과 그 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 규정

라.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다. 협의사항

- 규제심사 : 심사실시(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2016. 10. 27.~11. 16.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구청장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영등포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의 사무실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2. 관내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건축, 노무분야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 사항

제5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영등포구 구민, 기업인, 직장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 영등포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및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② 무료법률 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이 진다.

-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할 수 있다.
-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같음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서식]

접 수 번 호		법률상담 기록부			접 수 일
No.					. . .
신 청 인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사건구분 (V 표시)		<input type="checkbox"/> 행정(법규위반, 처분, 부과등) <input type="checkbox"/>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세무, 노무,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input type="checkbox"/>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교통사고, 기타 각종 사건사고등)			
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					
처리구분		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추가회시 필요	기타
법률상담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 비용추계 기준 : 주1회 운영에 따른 상담관 수당, 상담실 운영비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상담관 수당(100천원×1명×52주), 상담실 운영(50천원×12월)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							
	소계(a)							
세출	○ 상담관수당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 운영비		600	600	600	600	600	3,000
	소계(b)		5,800	5,800	5,800	5,800	5,800	29,000
□ 총 비용(a-b)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시비	국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5,800	5,800	5,800	5,800	5,800	29,000
합계			5,800	5,800	5,800	5,800	5,800	29,000

6. 추가의견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정국 기획예산과 오유금
연 락 처	02-2670-7507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내역** :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영등포구 세출의 순증가,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조례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 기준**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산출근거, 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5.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6. **추 가 의 견** :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7. **작 성 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